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8225 |
|----------|-------|

발의연월일 : 2026. 4. 9.

발 의 자 : 강명구 · 임종득 · 임이자  
서일준 · 성일중 · 나경원  
이성권 · 김정재 · 엄태영  
구자근 · 박성훈 · 김재섭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낙시 및 낙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낙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낙시 인구는 약 1천만 명에 이르고 이 중 장애인 낙시인은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장애인의 낙시 참여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낙시 이용 편의 시설 확대 등 낙시접근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낙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의 낙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낙시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포용적인 낙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낙시 참여를 촉진하여 낙시 및 낙시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장애인의 낙시접근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낙시에 접근하거나 낙시터 및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장에 관한 사항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장애인의 낙시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 등 낙시진흥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낙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